



## 명쾌한 수다

#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 요구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해지권 인정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A씨(원고)는 2015년 B씨(피고)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A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보험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 (1) 보험계약에서 신뢰관계과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2) 특약부분에 관한 중대사유 발생으로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 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의 판결**

(1)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부당지급보험금의 액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계약 자체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해지의 효력이 보험계약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결론**

- (1) 보험계약에서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된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부분에 대한 중대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출처/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